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7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박순규 의원 (1명)
찬 성 자 : 김인호, 노식래, 신정호, 고병국, 김재형, 이영실, 박기재, 이정인, 김경우, 추승우, 노승재, 홍성룡, 최기찬, 문장길, 김화숙, 이승미, 이병도, 성흠제 의원 (18명)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서울시는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시 조례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타사광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사광고에 대한 실명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

○ 실명제 대상에 자사광고를 포함하는 한편, 실명제 표시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법 시·도 조례 표준(안)」(2016.9.19.)에 적합하도록 자사광고를 포함시키고 단서조항을 삭제함. (안 제26조 1항)

나.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법 시·도 조례 표준(안)」(2016.9.19.)에 적합하도록 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하는 방법과 광고물 실명제 서식을 추가함. (안 제26조 2항, 별지 제2호 서식)

다. 현실적으로 실명제 표시 위치가 불가능한 광고물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광고물의 형상을 고려하여 개선함. (안 제26조 3항)

라.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법 시·도 조례 표준(안)」(2016.9.19.)에 따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도록 함. (안 제26조 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타사광고는”을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모바일로”를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하는 모바일·전자적방식 등”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명제 표시의 위치는 광고물 등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 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허가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26조제2항 관련)

〔예시〕

비고
(예시)

1. 표시규격 : 가로 5㎝ × 세로 5㎝
2. 표시내용 : ‘201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에 따라 **타사광고는**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상 표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① ---------- ---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 〈삭 제〉
② 실명제 표시는 **모바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번호·위치·규격·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하는 모바일·전자적방식 등** ----------, ----------.
③ 실명제 표시의 위치는 광고물 등의 **아래부분으로부터 160센티미터 높이의 오른쪽으로 한다.**	③ ---------- --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신 설〉	**④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